

안전인증소식

[Q&A]

전기용품 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제도」가 신규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재개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 주의 :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Question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 확인

저희는 화장품을 도매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피부관리실에서 털(겨드랑이, 팔, 다리 등)을 제거할때 사용하는 밀납 왁스를 용해시켜 주는 히팅기를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전압은 220V를 사용하며, 고체로된 밀납왁스를 코일로 서서히 열을 가열하여 젤 형식으로 용해시켜 주는 제품입니다.

개인용이 아니고 피부관리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문의하신 “밀납 왁스를 용해시켜주는 기능을 지닌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3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중 “전기용해기”에 해당(’08.12.3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출고(통관)되는 제품부터는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자

울안전확인신고를 해야 제조·판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 1월 1일 이전이라도 귀하가 원하실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도 가능합니다.

Question 동물 또는 캐릭터모양의 전기용품

동물 또는 캐릭터 모양 전기용품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그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예를 들어,

- 동물캐릭터 스탠드 (전원: 220V/60Hz 소비전력:27W)
- 동물캐릭터 취침등 (1.5V건전지8개 또는 12VAC아답터 사용)

즉,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V이하라면 동물캐릭터라도 상관이 없이 판매가 가능한가요?

Answer 귀하가 질의하신 동물캐릭터의 조명기구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전기용품의 외관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취급될 수 있는 형상 및 장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국제기준을 적용, 동물 모양의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캐릭터 전기용품은 어린이들의 접근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일부 제품은 생산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모양의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uestion 지중매립등(옥외용) 내부배선 규격 질의

국내규격 및 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지중매립등(옥외용)의 경우, 기구내 배선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적용규격(KS 및 기타인증)이 있는지요? 없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배선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K-60598-1 제 5절에 의거하면 외부 및 내부배선의 경우 절연, 두께, 열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KS제품을 써야 하는 규정은 명기가 없음)

Answer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안전인증 대상인 조명기구에는 해당 기준(K60598-1)에 내외부 배선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적합한 전선을 사용하여 제작하시면 됩니다. 안전인증에는 내·외부 배선도 안전성 시험 대상이 되므로 적합한 전선을 사용하셔야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